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64
----------	----

제출연월일 : 2011. 6.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와 휴양림내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등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내지 제3조)
- 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6조)
 - 입장료 징수기준 : [별표1]
 -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주차장, 야영장,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 : [별표2]
- 다. 입장료 등의 감면, 추징,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9조, 제12조)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 [별표3]
- 라. 입장제한 및 퇴장, 휴양림의 사용제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제10조 내지 제11조)
- 마.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내지 제19조)
- 바.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내지 제21조)
- 사. 기타 제반 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내지 제24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라. 사전규제검토 : 해당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바. 입법예고 : 2011. 04. 04. ~ 04.24.(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사.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HAPPY700평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단체" 란 3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휴양림관리·운영자" 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휴양림 현장책임자" 란 휴양림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시설물 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사용자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1의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평창군 명예군민
 2. 숙박시설 이용자
 3.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산림문화휴양관 이용자 : 1동당 주차 20대
2. 숲속체험관 (36㎡) 이용자 : 1동당 주차 2대

③ 다음 각 호와 같이 별표 2의 시설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평창군민 및 명예군민의 경우는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명예군민증 등)을 제시한 자에 한한다.

1. 평창군민 및 명예군민 : 주차장·야영장·숙박시설 사용료의 50%
2. 숙박시설 단체이용자(중복될 때에는 하나만 적용, 비수기에 한함) : 사용료의 20%

제8조(입장제한 및 퇴장) ①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휴양림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및 정신이상자
2.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5. 혐오 및 유해동물을 동반한 자
6.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③ 휴양림 현장책임자는 이용자가 휴양림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2. 쓰레기 등 오물을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 버리는 행위
3. 지정장소 이외의 곳에서 불법취사 및 각종 상행위
4. 동물의 포획, 식물의 채취 또는 토석채취 등 산림을 무단 전용하는 행위
5. 휴양시설물을 이전·오손·파괴하는 행위
6. 각종 무속행위
7. 그 밖에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입장료 등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감면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휴양림의 사용을 일시 제한하는 경우, 제4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의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장 사무의 위탁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양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휴양림 시설의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시설유지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④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연간 위탁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관리·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물품·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3. 시설물 관련한 책임능력 및 경제성(경력)
4. 위탁관리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성
5.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6. 그 밖에 시설물과 관련한 사항 등

제15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 갱신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갱신할 때에는 위탁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탁 갱신한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또는 손실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수탁자는 협의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전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7조(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하거나 시설물관리 업무를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1. 제16조 및 제18조를 위반할 때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군수가 필요로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예산 및 운영의 지원)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제20조(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수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자연휴양림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은 군의원 1명, 관계공무원 4명, 휴양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를 수행할 인력,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설치 목적과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체결 등)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탁기관·단체명
3. 위탁대상 재산·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6.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방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자연휴양림 관리 등

제22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림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준용) 입장료 등 금전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장 요금표 (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일반요금	2,000	1,500	1,000	1,500	1,000	500
평창군민	1,000	800	500	800	500	300

[별표 2]

시설사용 요금표 (제6조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구 분	성수기 (7.1 ~ 8.31)	비수기 (9.1 ~ 다음해 6.30)		비 고
			주말, 공휴일	평일	
주차장	경차	2,000	2,000	1,500	1대/1일
	소형(15인승 이하 승용차, 1톤이하 화물차)	3,000	3,000	2,000	
	중형(16~35인승 승합차, 1톤 초과~5톤 미만 화물차)	4,000	4,000	3,000	
	대형(36인승 이상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5,000	5,000	4,000	
야영장	텐트 (개인용 텐트)	3,000	3,000	2,000	1조/1일
산림문화 휴양관	강당 184㎡	200,000	200,000	150,000	1일
	세미나실 27㎡	50,000	40,000	30,000	1일
숙박 시설	숲속체험관 36㎡ (4-6인, 1실)	130,000	100,000	80,000	1일

1. 시설사용에 대한 1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입실일(check-in) 14:00부터 다음일 (check-out) 12:00까지로 한다
 - 야영장의 사용시간은 입장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 주말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을 말하며, 공휴일이라 함은 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
3. 이용시간 종료 후 퇴실이 지체될 경우 다음과 같이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 2시간 이하 지체는 이용요금의 30%, 3시간 이하 지체는 50%, 3시간 초과 지체는 전액 추가징수
4. 숙박시설은 다음의 기준인원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다.
 - 숲속체험관 36㎡ : 4-6인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가. 입장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나. 주차장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이용시간	2시간 이내	5시간 이내	5시간 초과
반환금액	징수액의 70%	징수액의 50%	전액징수

다. 숲속체험관 및 산림문화관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	내 용	반환 기준		비 고
숲속체험관 산림문화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반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참조
		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90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을 할 수 없거나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납		

관계법령발취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 및 타당성평가) ①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 이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0.3.17] [[시행일 2010.9.18]]

② 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32조에서 같다)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한다)를 받은 자의 지정 신청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 신청의 절차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면 지정 대상 산림의 경관·위치·면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지정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지정된 자연휴양림의 면적을 확대하여 지정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위치·지번·지목·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평가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에 휴양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양시설 및 숲가꾸기 등의 조성계획(이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④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산림청장은 자연휴양림조성계획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용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면적·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제22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 자연휴양림 또는 시설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9.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4.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임업후계장·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4. 위반에 따른 제재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의 산림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단서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 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⑥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 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한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하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기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생략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사업자는 물품 등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 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설치점이 아닌 자가 수리·설치하여 물품 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나.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한다.
 - 다.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 라.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마. 할인판매된 물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한다.
 - 바.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업자가 물품등의 거래에 부수(附隨)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인 경품류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은 제1호와 같다. 다만,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

는 소비자로부터 그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을 반환받거나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받는다.

3. 사업자는 물품 등의 판매 시 품질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증서(이하 "품질보증서"라 한다)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물품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품질보증서를 교부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상방법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만을 표시할 수 있다.
4.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제8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다만,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르며, 유사품목의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내용연수(耐用年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 다. 중고물품 등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품목별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 라.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용역의 경우에는 제공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다른 경우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물품 등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마.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등 또는 물품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물품 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하여야 한다.
5. 물품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물품 등의 소재지나 제공지에서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쉬운 물품 등은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다.
6.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18. 숙박업(1개업종)

품 종	피 해 유 형	보 상 기 준	비 고
숙박업	1) 성수기의 경우 ①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 손해배상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 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한다. ■ 여름시즌: 7.15~8.24 ■ 겨울시즌: 12.20~2.20
	2) 비수기의 경우 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②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계약금 환급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배상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